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6. 11 선고 2023가단6376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5. 28.

판 결 선 고 2024. 6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36㎡를 명도하고,
나. 2023. 10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명도 완료일까지 월 2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3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,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.

판사 김아름

별지